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환수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대상자에게 구직촉진수당 환수처분 사전통지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4. 5. 30.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장

-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구직촉진수당 환수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8조, 제29조
-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연 번	성명	생년월일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내용			송달불능 사유	주소
				확정된 처분의 제목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1	최정O	76. 4. 29.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구직촉진수당 환수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구직촉진 수당 환수처분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1항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 됨에 따라 기 지급된 구직촉진 수당 환수(생계급여 개시일 23.12.04.)	구직촉진수당 부당이득액 (2,3,4회차) 총 1,796,670원 반환 및 지급 제한	폐문부재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일산로 488(이하 생략)

- 4. 공고기간: 2024. 5. 30. ~ 2024. 6. 14.(15일간)
- 5.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 김미영(Tel. 031-931-459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